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73
----------	------

2025년 4월 25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 안 자 : 최윤희 의원 (찬성자 18명)
- 나. 제 안 일 : 2025년 3월 31일
- 다. 회 부 일 : 2025년 4월 2일
- 라. 상 정 일 :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4월 2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윤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은 2023년 1월부로 종료되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지원협력사업 역시 2025년 폐지가 확정되어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음.
- 조례가 유지될 경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남아 있어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5. 4. 5. ~ 4. 9.)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폐지조례안은 2017년 1월 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의 대상인 조례, 이하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본 조례는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이하 ‘교육청’)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이하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음.
 - 구체적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제3조), 사업 평가(제4조),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제5조부터 제10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 ※ 본 조례는 2017년 1월 5일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378호)로 제정·시행되어 1차례의 일부개정(2018.3.22.)이 있었음.
- 본 폐지조례안은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의 종료(‘23.1월) 및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지원협력사업 폐지(‘25.1월)에 따라 본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고, 사문화된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적 혼선을 막고, 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음.
- 평생교육국은 정책 변화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원안 동의)을 개진하고 있음.
 - 교육청은 혁신교육지구 사업 종료 이후 소관 조례(「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2023.7.26.) 하였으므로, 본 조례 폐지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제출함.
- ※ ‘혁신교육지구’ 관련 조례 현황
 - (서울시)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2017.1.15., 제정·시행)
 - (교육청)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2016.12.29., 제정·시행)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조례」(2023.7.26., 전부개정)

○ 따라서, 본 조례의 목적에 맞게 관련 사업 지원이 적정하게 운영·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조례에 규정된 책무와 평가, 위원회 구성 등의 실적이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사라졌는지 등을 포함한 조례 폐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3년 1월 이후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조례상 위원회(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가 미구성¹⁾되었고, 2023년도 이후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이 없다는 점은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혁신교육지구 2단계 협약'(19~'22)을 끝으로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을 종료함. 대신, 행정1부시장 방침(2022.10.27.)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23~'24)을 추진하였음.

〈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

1. 추진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목적 : 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학교-마을 협력 교육모델 확산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에 혁신교육지구 운영지원금(시비 보조금) 교부
- 추진내용 : 민·관·학 거버넌스, 지역-학교 연계 교육과정, 지역연계 방과후 활동 지원, 청소년 자치활동,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
- 위 원 회 :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市와 교육청 각각 위원회 설치**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서울특별시 혁신교육지구 지원조례 제5조)
 -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서울특별시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조례 제7조)

1) 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2016.12.20.) 회의록에서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교육청)와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서울시)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확인.

구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市 산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교육청 산하)
구성	-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내부위원은 5명 이내(부시장 포함한 관계 공무원) ▶ 외부위원은 10명 이내(시의원 2명, 교육분야 전문가 8명 이내)	- 구성 : 위원장 포함 35명 이내 ▶ 위원장 3 (시 평생교육국장,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지구별 대표위원 중 선출) ▶ 당연직 2(교육청 및 시 실·국장) ▶ 위촉직 33(시장 추천 1, 교육청 추천 2, 시의회 추천 4, 지구별 추천 25, 기타 1)
심의 기능	-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 - 혁신교육지구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혁신교육지구 지원을 위한 평가에 관한 사항 -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체제 구축 및 발전방향 협의 - 사·교육청 협력사업 추진조정 및 운영지원 확보방안 협의 - 혁신교육지구 운영 모니터링 및 사업 점검 - 그밖에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협의

□ 추진경과

- 2014. 11. 17.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공동선언(시장-교육감)
- 2015년~2018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2개 자치구 운영(1단계)
- 2019년~2022년: 서울형혁신교육지구 25개 자치구 확대 운영(2단계)

※ 2단계 협약(시-교육청)을 끝으로 사업 종료

2. 추진실적 및 연도별 예산편성 · 집행 현황

□ 추진실적

- 서울형 혁신지구 지원위원회 운영실적 : 없음 (위원회 미구성)
 - 서울형 혁신지구 운영위원회(교육청 산하)만 연평균 4회 개최 *위원회 통합운영
 - ※ 위원회 중복 개최(비효율성)의 이유로 서울형 혁신지구 지원위원회(서울시 산하) 미운영
- 서울형 혁신지구 지원사업 운영실적 ※ '22년 기준
 - 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학교를 연계한 수업 혁신
 - 지역연계 교육과정 참여학교 1,244개교 (전체 대상학교의 92% 참여)
 - ② 지역사회 교육협력체제 조성을 위한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
 - 방과후 프로그램 2,679여개 운영, 지역사회 교사 2,250여명 지원
 - ③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활동 지원
 - 청소년 동아리 1,160여개 운영, 자치의회 및 청소년 축제 등 126개 프로젝트 지원
 - ④ 자치구 특색에 따라 교육격차 해소 사업 등 구별 특화사업 추진
 - 기초학력 향상(대학생 멘토링, 따뜻한 온돌방, 도담도담 마을학교 등 60개)

□ 연도별 예산편성·집행 현황 (최근 3년)

(단위 : 천원)

연도	사 업 명	편성액	지출액	집행내용	집행률
2022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 지원사업	10,000,000	9,042,158	마을 연계 학교교육과정, 마을방과후 프로그램, 자치동아리 지원 등	90.4%
※ '23년부터 예산 미편성 (사업종료)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요약

-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의 종료('23.1월)에 따라, 본 조례의 입법 목적을 비롯해 시장의 책무(제3조), 사업 평가(제4조), 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제5조부터 제10조) 규정 등의 효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관련 지원 예산의 편성 및 집행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본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혁신교육지구 지원위원회) 미구성 조치 및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 종료 이후 대응 조치에 있어서, 조례의 제정 목적(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시-교육청-자치구 간 협력 등)을 달성하기 위한 조례 개정 또는 개선 방안 마련 등의 집행기관의 노력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최유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7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최유희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영옥, 김영철,
김재진, 김태수,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중화, 신동원, 유만희,
유정인, 이종환, 채수지,
최민규, 허 훈, 황철규
의원(18명)

1. 제안이유

-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은 2023년 1월부로 종료되었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지원협력사업 역시 2025년 폐지가 확정되어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음.
- 조례가 유지될 경우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규정이 남아 있어 행정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법령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재정지출) 조·항 삭제에 수반되는 직접적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 (재정수입) 각종 자료 및 서울시 관련부서 문의결과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는 별도의 사업수입¹⁾은 없으므로 동 폐지안에 수반되는 재정수입 순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세입감소 영향 검토 필요성] 통상 폐지에 따른 비용발생은 없으나, 해당 조례를 근거로 하는 별도의 사업수입 감소가 있을 수 있어 폐지에 따른 세입감소 영향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